

전주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8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단5293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최대일, 권승현

변론 종결 2020. 12. 16

판결 선고 2021. 1. 20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단529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1. 24. 접수 제9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32014호로 2016. 3. 4.부터 2016. 12. 5.까지의 대여금,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3. 1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86,7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대 여금 등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의 무자력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당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당심의 J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C은 채무초과상태이다.

1)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 : 295,000,000원(K시세의 일반평균가)

2)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	비고
1	E	26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	L	7,828,000원	
3	M조합	12,424,000원	=7,424,000원+5,000,000원
4	N카드	851,000원	
5	O카드	479,000원	
6	원고	86,717,400원	이 사건 채권
합계		368,299,400원	

다. 사해행위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 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 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세보다 낮지 않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사해 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8. 선고 2007다39994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C은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1년도 되지 않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수 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1. 24. 접수 제9168호로 마 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은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취소 및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

별지